

경운대학교 커리어역량개발본부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커리어역량개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부는 본교의 진로·취업·창업지원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기능간 연계성, 체계성을 확립하여 학생의 효율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을 도모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본부장) ①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부장은 학생진로개발처장이 역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진로, 취업 및 창업으로 구분되는 각 세부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부 산하에 진로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를 총괄하고, 각 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부에는 전문위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조교 및 계약직 등을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계약직원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능력을 갖춘 자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1년 단위로 임용한다.

⑤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본부장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편성
2.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3.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종합 운영결과
4.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대내외 확산 업무
5. 프로그램 간 연계와 운영부서 간 협력을 위한 제반 업무
6. 진로·취창업지원위원회 운영
7. 기타 진로·취창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6조(운영) ① 본부는 진로·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된다.

- ② 사회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진로·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연간 운차년도 진로·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사업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 종료 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및 우수사례를 관리한다.
- ⑤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로·취창업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목적) 본부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부 운영의 기본 계획 및 결과
2.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진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및 유관기관과의 진로, 취업, 창업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장비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하며 7명으로 구성한다.

- ② 커리어역량개발본부장, 진로지원센터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은 당연직위원에 해당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본부장이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본부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기타

제11조(기타규정)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류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